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53호 2021. 2. 3.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1-17호 2021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2
- 정선군 고시 제2021-18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1차)··4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93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주민공
람·공고.....6
- 정선군 공고 제2021-98호 정선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
정안 입법예고.....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1-17호

2021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제6항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정 선 군 수

1. 입산통제기간

- 봄 철 : 2021. 02. 01 ~ 2021. 05. 15.
- 가을철 : 2021. 11. 01 ~ 2021. 12. 15.

※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에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을 금지합니다.

2. 통제구역 지정목적 : 산불예방, 산림보호

3.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내역 : “붙임” 참조

- 가. 입산통제구역 :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20번지 외 8,376필 12,768ha
- 나. 등 산 로 : 36개구간 157.1km(개방 38.1km, 폐쇄 119.0km)

4. 기타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라. 다만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2) 산불예방, 병해충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므로 입산신고를 하지 않고 입산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산림과(033-560-21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고시 제2021-18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1차)

강원도 고시 제112호(1987. 9. 09)호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97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가(기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9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변경)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m ²)	금회 시행	
공원	임계3 어린이공원	2,441	■ 임계3 어린이공원 변경 조성 A=2,441.0m ² - 편익시설 18.0m ² - 유희시설 322.0m ² - 운동시설 150.0m ² - 기반시설 893.0m ² - 녹지 및 기타 1,058.0m ²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당초 : 2020. 12. 31→ 변경 2021.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변경없음)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임계면 송계리	280-30	구거	124.0	124.0	-	농림축산 식품부	-	-	-
2	임계면 송계리	497-2	도로	5.0	5.0	-	국 (건설부)	-	-	-
3	임계면 송계리	640-50	도로	90.0	90.0	-	국 (건설부)	-	-	-
4	임계면 송계리	679	답	446.0	122.2	봉양3길 21	정선군	-	-	-
5	임계면 송계리	683-2	공원	13.0	13.0	봉양3길 21	정선군	-	-	-
6	임계면 송계리	686-1	답	455.0	300.0	봉양3길 21	정선군	-	-	-
7	임계면 송계리	689-1	공원	285.0	285.0	봉양3길 21	정선군	-	-	-
8	임계면 송계리	691-1	공원	685.0	685.0	봉양3길 21	정선군	-	-	-
9	임계면 송계리	692-2	공원	772.0	770.9	봉양3길 21	정선군	-	-	-
10	임계면 송계리	692-3	답	174.0	1.9	봉양3길 21	정선군	-	-	-
11	임계면 송계리	696-3	공원	44.0	44.0	봉양3길 21	정선군	-	-	-
계		11필지		3,093.0	2,441.0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93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9일

정 선 군 수

-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애산리 일원
- 3.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4.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도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5. 관련도서 비치 및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정선읍행정복지센터
-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부터 14일(2021. 1. 29 ~ 2. 15)
- 7. 의견제출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과 및 정선읍행정복지센터 서면 제출
- 8.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열람자 의견서**

공 략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21. . .
공 략 인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토 지 소 재 지	위 치			
	면 적			
	기 타 사 항			
공 략 의 의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따라 열람·공고한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1-98호

정선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자산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가치실현과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이 된 올림픽의 유산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함(안 제3조)
- 지역사회 등은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안 제4조)
-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활동시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국내·외에 확대하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류의 장려(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01. 26. ~ 2021. 02. 15.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2월 1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547), 팩스(033-560-2593)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문화예술회관 1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자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정선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올림픽 유산”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이하 “동계올림픽”이라 한다)로 형성된 긍정적이고 사후적인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말하며,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2.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이란 동계올림픽 유산과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시설 사후활용, 유산보존을 위한 주민 참여활동 등을 말한다.
3. “지역사회”란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을 위하여 참여활동을 추진하는 군민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를 통한 올림픽의 가치실현과 올림픽의 유산을 활성화하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지원) ① 지역사회 등은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사업 및 활동
2. 동계올림픽의 정신을 계승·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및 교류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올림픽 유산 보존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올림픽 도시 간 교류 지원) ① 군수는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국내·외에 확대하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올림픽 개최도시와의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올림픽도시 간 문화·관광·체육·회의 등에서의 교류(민간단체교류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본호신설 2018.11.12.]

제5조(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해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